##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0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박홍배·박희승·박정현

김한규 • 민병덕 • 강준현

이연희 • 김현정 • 김정호

이용우 • 박해철 • 박성준

안규백 · 김남근 · 한준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 되어 지역 주민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며, 지정 이후에도 생물다양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나, 지정 지역의 범위가 넓고 소관 부처인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는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감독 공백을 막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감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실천목표 중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지속한다는 명시에 부합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역주민이주체가 되어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여 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기여한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는실정임. 그로 인해 관리조직의 유지가 불투명해 향후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이하 "주민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지도·감시 및 계몽을 하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을 위촉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주민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시원에 게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촉된 주민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주민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 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 역 주민 등을 생태·경관보전 지역 주민감시원(이하 "주민감 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지도·감시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을 위촉한 환경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주민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 시원에게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 는 위촉된 주민감시원이 심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주민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